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7. 7. 17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. 7. 7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7. 7. 10.
- 다. 상정일자 : 제21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17. 7. 17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의약과장 이 주 영

가. 제안이유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 지침인 서울시 「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」 추진계획을 반영하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10조 제4항 신설)
- 2)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(안 제12조의2)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○ 조례안의 취지는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증진 활동 촉진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2017년 서울시의 「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」 추진계획을 반영하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우울증 진료환자 중 전체 환자의 20.8%가 50대로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높고, 지난 4년 동안 30.1%가 증가하였으며, 서울시민 우울증 경험률은 6.9%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.

50대 이후는 조기은퇴, 노후 불안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정신질환 발생이 높지만, 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정신건강검진체계는 미흡한 실정에 있음.

따라서 효율적인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을 위하여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,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, 향후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지역 내 민간의 전문자원 활용,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검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, 다양한 홍보를 통한 검진을 제고로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